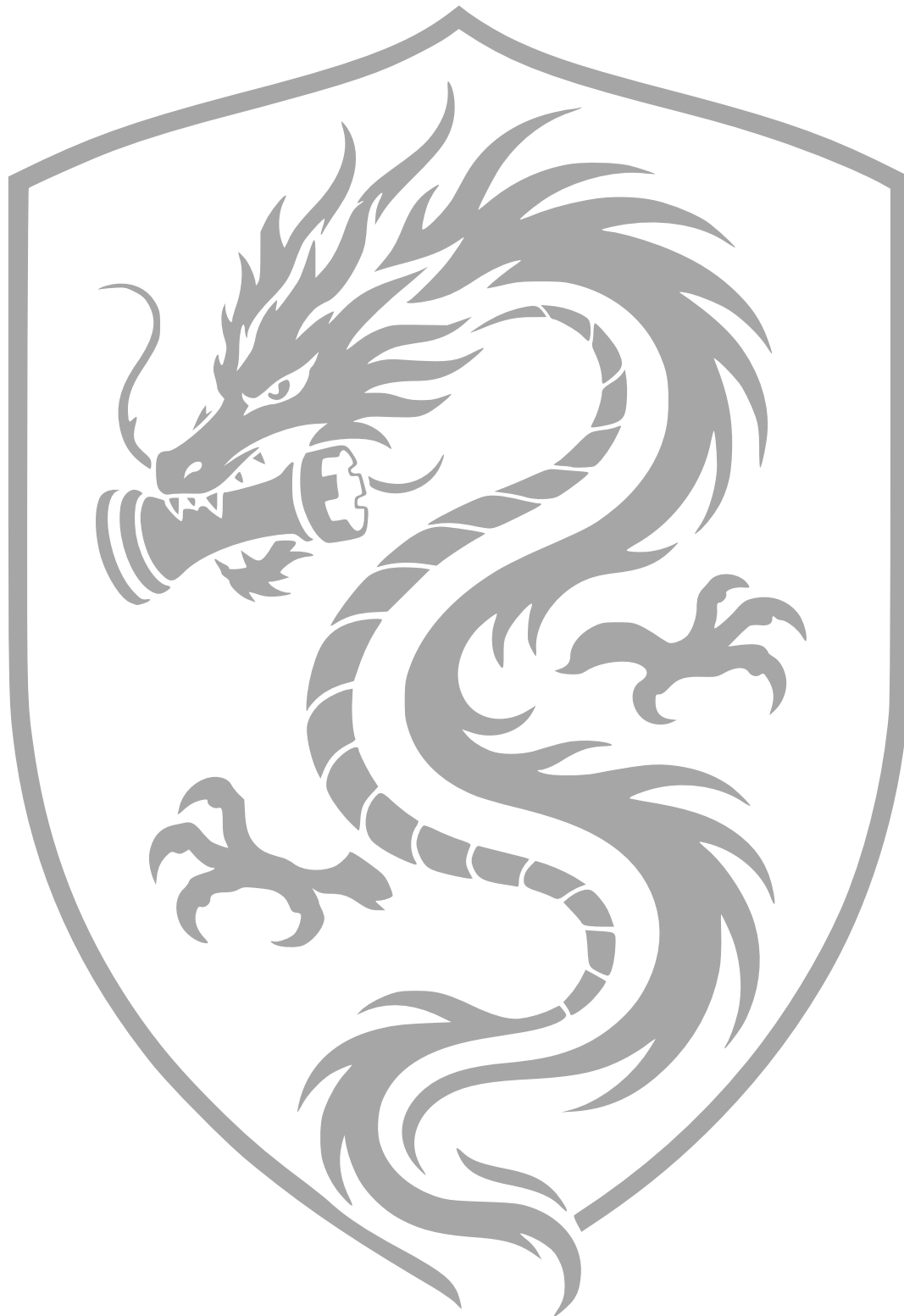


## 중앙파상 회칙

---

2026 년 6 월 24 일 제정

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(명칭)

본회의 명칭은 중앙파상(이하 "본회")이라 한다.

### 제 2 조(목적)

본회는 체스를 통한 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, 체스 실력의 향상 및 건전한 체스 문화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3 조(운영원칙)

- ① 본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한다.
- ② 본회는 비영리로 운영하며,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지 않는다.
- ③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, 총회의 의결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
### 제 4 조(활동)

본회는 정기모임, 자유대국, 체스 교육과 연구, 대회 개최 및 참가, 친목행사, 다른 단체와의 교류, 공동물품의 구입과 관리 등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회원

### 제 5 조(회원의 구분)
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졸업회원으로 구분한다.

### 제 6 조(정회원)

- ① 중앙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가입 절차를 마치고 해당 학기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정회원이 된다.
- ② 회비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 정회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### 제 7 조(준회원과 졸업회원)

- ① 가입 절차 중에 있거나 정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.

- ② 본회에서 활동한 사람이 졸업·수료 등으로 학생 신분을 잃은 경우 졸업회원이 될 수 있다.
- ③ 준회원과 졸업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, 원칙적으로 의결권·선거권·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.

### **제 8 조(가입과 탈퇴)**

- ①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.
- ② 가입 절차, 모집 시기 및 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- ③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여부는 세칙으로 정한다.

### **제 9 조(회원의 권리)**

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- 1.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
- 2. 총회에서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
- 3. 선거권과 피선거권
- 4. 본회의 활동 및 회계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

### **제 10 조(회원의 의무)**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
- 1. 회칙, 세칙 및 적법한 의결을 존중할 의무
- 2. 다른 회원을 존중하고 원활한 활동에 협조할 의무
- 3. 공동물품을 소중히 사용할 의무
- 4.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, 활동 참가자는 정해진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
- 5. 대국과 대회에서 공정하게 행동할 의무

### **제 11 조(회원의 존중)**

- ① 회원은 성별, 나이, 학번, 학과, 국적, 장애, 종교, 체스 실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.
- ② 회원은 폭력, 협박, 성희롱, 지속적인 괴롭힘 등 다른 사람의 안전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## 제 12 조(개인정보)

본회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·이용하며, 그 목적이 끝난 경우 관련 법령이나 별도의 동의에 따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하거나 파기한다.

## 제 3 장 총회

### 제 13 조(지위와 구성)

-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-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14 조(권한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하거나 보고받는다.

- 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- 2. 회장의 선출 및 회장단의 탄핵
- 3. 회비의 기본 금액
- 4. 집행부의 활동 및 회계 보고
- 5. 회원의 제명
- 6. 본회의 해산
- 7. 그 밖에 재적 정회원 5 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정된 사항

### 제 15 조(정기총회와 임시총회)

-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1 회 개최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회장, 집행부 또는 재적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.
-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회장이 정당한 요구에도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16 조(소집공고)

- ① 총회는 일시, 장소, 안건을 밝혀 원칙적으로 7 일 전까지 공고한다.

② 긴급한 임시총회는 24 시간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다만, 회칙의 제정·개정, 회장단 탄핵, 회원 제명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.

#### **제 17 조(의장)**

-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
- ② 회장이 안건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이 진행한다.

#### **제 18 조(개회와 의결)**

-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4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일반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칙의 제정·개정, 회장단 탄핵 및 회원 제명은 출석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본회 해산은 재적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**제 19 조(표결과 참여)**

- ① 표결은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선거·탄핵·징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.
- ② 총회는 대면, 비대면 또는 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③ 본인 확인과 투표의 정확성이 확보되는 경우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.
- ④ 대리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.

#### **제 20 조(의결 결과)**

총회의 주요 논의와 의결 결과는 회원에게 공고한다. 다만, 개인정보나 당사자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 **제 4 장 회장단과 집행부**

#### **제 21 조(회장단)**

- ① 회장단은 회장 1 명과 부회장 1 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·해임하며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22 조(집행부)

- ① 집행부는 회장단과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의 직책과 수를 정하고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.
- ③ 집행부는 본회의 일상적인 활동과 재정을 운영하고 총회의 의결을 집행한다.

## 제 23 조(집행부의 의결)

- ① 집행부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③ 집행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## 제 24 조(임기)

- ① 회장의 임기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보궐선거 등의 사유로 임기 개시일이 늦어질 수 있다.
- ② 부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회장의 임기와 같다.
- ③ 구체적인 임기와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## 제 25 조(궐위)

-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집행부는 잔여임기와 본회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집행부는 임시대표자를 정하고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
## 제 26 조(탄핵)

- ① 회장 또는 부회장이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재적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.
- ② 탄핵 대상자에게는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 제 5 장 선거

### 제 27 조(선거의 원칙)

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한다.

### 제 28 조(선거관리)

- ① 집행부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한다.
- ②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 돕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후보자 등록, 선거운동, 투표, 당선 결정,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### 제 29 조(당선)

- ①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.
- ② 단독후보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③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한다.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회장이 당선인을 정한다.

## 제 6 장 재정과 물품

### 제 30 조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참가비, 지원금,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# 제 31 조(회비와 참가비)

- ① 회비의 기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.
- ② 집행부는 특정 행사에 필요한 실비를 참가자에게 별도로 받을 수 있다.
- ③ 회비와 참가비의 납부, 감면,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### 제 32 조(재정운영)

- ① 집행부는 본회의 목적에 맞게 재정을 사용하여야 하며, 수입과 지출의 내역 및 증빙자료를 관리한다.
- ② 집행부는 매 학기 1 회 이상 회계 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- ③ 회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 33 조(공동재산)

- ① 회비나 지원금 등으로 취득한 금전과 물품은 본회에 귀속된다.
- ② 공동물품의 관리, 대여, 파손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- ③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집행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 7 장 회원에 대한 징계

### 제 34 조(징계의 사유와 종류)

- ① 회원이 회칙이나 세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, 다른 회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거나, 본회의 재산 또는 공정한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.
- ② 징계는 주의, 경고, 일정 기간의 활동 제한, 회원 자격 정지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.
- ③ 징계는 문제의 정도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, 가능하면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우선한다.

### 제 35 조(절차)

- ① 집행부는 징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주의, 경고, 활동 제한 및 회원 자격 정지는 집행부가 의결한다.
- ③ 제명은 집행부의 의결 또는 재적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상정하고, 총회에서 의결한다.
- ④ 징계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해당 징계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.



- ⑤ 구체적인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.

### **제 36 조(징계 내용의 공개)**

징계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하며,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.

## **제 8 장 회칙과 세칙**

### **제 37 조(규정의 효력)**

- ① 회칙은 본회의 최고 규정이며, 세칙과 집행부의 결정은 회칙 및 총회의 의결에 어긋날 수 없다.
- ② 세칙은 회칙의 시행과 본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### **제 38 조(회칙의 제정과 개정)**

-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집행부의 의결 또는 재적 정회원 5 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.
- ②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.
- ③ 제정안 또는 개정안은 총회 7 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의결된 회칙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제 39 조(세칙)**

- ① 세칙은 집행부의 의결로 제정·개정·폐지할 수 있다.
- ② 세칙을 제정·개정·폐지한 경우 그 내용과 시행일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공고한다.
- ③ 세칙은 회칙에 어긋나거나 회칙에서 정한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..